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2일, 박희승의원 등 7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 8.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4. 8. 23.)

상정, 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4. 11. 20.)

상정, 축조심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5. 8. 20.)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5. 11. 19.)

상정, 축조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6. 2. 2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 3. 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희승의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은 취약한 상황임. 수도권과 대도시 에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 격차가 심각 하며, 의료 자원의 불균형으로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도 커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내과·외과·소아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 전문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지역 내 자체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같은 질병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고, 심지어 생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가 경쟁력 자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재난 요소가 되고 있으나,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공공의료와 지역医료를 담당할 인프라와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그렇기에 공공보건의료의 지역·분야별 균형적 제공과

공중보건위기,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큼.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공공의료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공공의료 역량을 대폭 확충해야 함. 이에 필수 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함으로써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필수·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하고, 학비등을 지원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분야 복무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완화하려는 등의 취지를 지닌 것으로 보임.

다만 과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이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영향으로 의료계 반발 및 의료 공백 우려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감안

하여,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의과대학 신설은 「고등교육법」 상 대학 설립은 교육부장관 인가 사항인 점 등을 감안할 때에 국가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지역 주민 60% 이상 선발이라는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역 의료격차의 해소 및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라는 입법취지와 학생 선발의 지역간 형평성 사이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동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